

(부 대 /기 관 명)

제 호

징 계 부 가 금 부 과 처 분 서

소 속 :
계 급 : 군 번 :
성 명 :

위 사람을 에 처함.

- 비행건명 :
-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:
- 징계부가금 부과배수 :
-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금액 :

직 위 계 급 성 명 (직인)

※ 「군인사법」 제56조의2제4항 및 「군인 징계령」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배수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급여채권, 예금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끝.

이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군인사법」 제60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고, 관련된 법원의 판결(몰수·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)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거나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「군인 징계령」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